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한 기 영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지방자치 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.
-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이 국가직과 지방직이 서로 상이하어 고용차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
-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은 100분의 20의 범위와 총 5년의 임용기간과 초과시 일정기간 동안 연장이 가능한 반면에 지방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은 100분의 10의 범위와 총 5년의 임용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